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실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교육청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목 차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의미	1
● 학생인권옹호관과 함께하는 학생인권 상담	3
●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위원회	7
● 쉽게 풀어 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11
● 경기도 학생인권 선언문	13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15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35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의미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의미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요구하는 인권 친화적 교육을 확인하고,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실현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2010년 9월 17일 제정, 동년 10월 5일 공포·시행하고 있는 지방교육 자치단체의 규범입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총 5장, 4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한 권리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학생인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교육, 학생인권 실천계획 수립, 정책모니터링, 학생자치 활성화 및 참여 기구 설치,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구제 제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역할도 중요 합니다. 학생은 학교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학생이 인권의 가치와 책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부모께서도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교육청과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잠재적 학생인권 침해자가 아니라, 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한 학생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공익적 차원의 교권을 조례가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으며 인권적 학생생활교육의 근거 규범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행복한 성장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과 함께하는 학생인권 상담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학생인권옹호관이란?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2011년 5월 부터 활동하고 있는 학교 인권 옴부즈퍼슨(ombudsperson)제도입니다.

-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공표
- 기타 학생인권옹호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만을 위한 제도인가요?

-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보호와 구제를 위해 활동한다는 의미는 학생 인권만을 무조건 우선시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보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 내 상대적 약자인 학생의 시선에서 인권 보호와 구제를 고민하지만, 학생인권을 매개로 연결되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어 학교 문화 전체가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함께 하는 인권상담

- 학생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친구나 선후배, 또는 선생님과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은 학생인권 및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인권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학생인권 보장의 시작입니다.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 여러분은 물론 학부모, 선생님들과도 함께 소통하며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인권상담

- 학생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조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인권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학생의 인권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부모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이나 구제신청의 사실은 비공개이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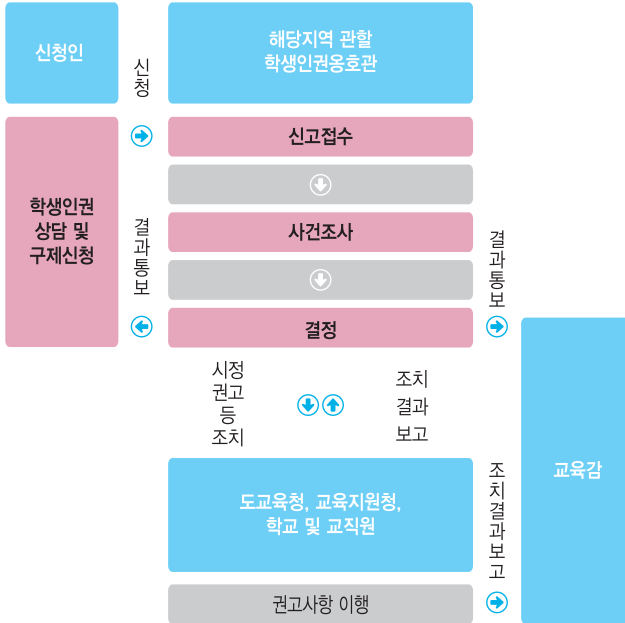
교사와 함께 하는 인권상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고 있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선생님들과도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언제든지 학생 인권을 매개로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학생인권옹호관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 학생교육 과정에서 예상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의 협의와 지원
- 인권 친화적 학생교육의 성공적 사례 보급
- 인권침해 사안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와 지원
- 학생인권침해를 원인행위로 하는 부당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지원 등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절차 흐름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실 연락처 및 이용 방법

사 무 실	성남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관 할 역	성남, 수원, 용인, 안성, 평택, 광주하남, 여주, 양평, 이천	안산, 안양과천, 화성오산, 군포의왕, 부천, 광명, 김포, 시흥	의정부, 고양, 파주, 연천, 포천, 가평,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연 락 처	Tel. 031-780-2694 Fax. 031-708-6592	Tel. 031-412-4571 Fax. 031-487-3339	Tel. 031-820-0192 Fax. 031-820-0194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서현동 27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34(고잔동)	경기도 의정부시 가남로 136번길 29(의정부부동)
옹호관실 이용방법	※ 상담 및 구제신청 이용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 ※ 상담 및 구제 신청은 피해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 위치의 옹호관실로 연락바랍니다. ※ 상담내용에 따라서는 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담당부서로 연결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위원회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목적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36조에 근거하여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학생들에게 권리로서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나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역할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①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②학생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③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④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성 및 선정 방법

- 임기 : 1년
- 선정 : 매년 5월
- 구성 : 100명 이내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한부모가정, 탈북학생, 운동 선수, 다문화가정, 저소득계층 등의 학생을 학생참여위원 100명 중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참고: 경기학생인권의 광장(<https://edup.goe.go.kr/shr>)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 목적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35조에 근거하여 학생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입니다.

❁ 역할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①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②학생인권에 관한 제도 개선, ③기타 학생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 구성 및 선정 방법

- 임기 : 2년
- 선정 : 홀수 년 5월
- 구성 : 20명 이내
 -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합니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 ※ 다만, 학생참여위원회 소속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목적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근거 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 및 규정을 제 · 개정 하기 위함입니다.

역할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교규칙 및 규정의 제 · 개정을 위해 준비 · 검토 · 심의합 니다.

구성 및 선정 방법

- 임기 : 1년
- 구성 : 8 ~ 12명
 - 위원회는 학생 · 교원 · 학부모 · 전문가 대표로 구성함
 - 학생은 반드시 1/3 이상으로 하고, 교사는 학생 수와 동일하게 구성함
 -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학교장을 제외하고 선출하고,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불가피한 경우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함
 - 학부모대표는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함
 - 전문가는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함
 -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함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 하여 공개함
 -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 · 학부모 ·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실시함



쉽게 풀어 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쉽게 풀어 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학생인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참여로 제·개정된 학교규칙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4조(교육공동체 상호간 인권존중)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은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교는 성별·성적·옹모·장애·가족 환경·징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며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 모든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학교는 장애·다문화 가정·현장실습·예체능·학습 부적응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학교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교는 두발길이를 제한하지 않는 등 학생의 개성 실현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생이 참여한 학교규칙에 따라 일정한 검사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학교는 학생의 프라이버시권을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하나, 위험한 물건의 소지가 의심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교규칙에 따라 일정한 검사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학교는 가족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의 학생의 개인 정보가 공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제15조(양심 종교의 자유) 학교는 학생의 잘못을 반성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종교 교육의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제16조(의사표현의 자유) 학교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등) 학교는 학생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학생이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교는 학생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보호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진술권 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는 학생에 대한 응징이 아닌 회복과 복귀를 목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선언문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경기도 학생인권 선언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또한 특정한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이러한 권리와 지위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며, 학생의 인권도 역시 이 안에 속한다.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에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여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려야 하는 동시에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도 살아가야 한다.

이에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학생이 즐거운 학교, 행복한 교실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 학생은 인격체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차별받지 않으며, 신체적, 정신적 폭력 및 체벌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인격적 주체로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개성을 실현하며,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호받고, 양심 · 종교의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복지와 교육환경 및 여가 생활과 문화 · 예술활동, 급식, 건강 등 복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징계 절차와 소수자의 권리보장 등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담 · 조사 등을 청구하는 등 보호 ·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교사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학교규칙을 준수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 학생은 학습자로서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 학교, 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 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 ·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 ·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 인생관 또는 가치적 ·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 ·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 이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제26조(상당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당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8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29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일반인용,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으로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3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 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5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⑥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행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경기도학생인권심의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명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 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0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3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사무기구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기구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과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교육지원청별 상담실) ①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에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시정권고 등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5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4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제39조에 따른 상임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6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권실천계획 등

제2조(인권실태조사)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매년 11월에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인권실천계획) 교육감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인권실천계획을 수립·시행 하되, 인권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각종 차별 방지에 관한 사항
2.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 안전망에 관한 사항
4.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6. 소수 학생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7. 학생인권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인권교육용 교재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9. 학생·교원·보호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학생인권 보호·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4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촉 위원은 지역별 · 학교급별 ·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참여위원회 소속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학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제8조(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교육청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참여위원회 위원은 별표의 관할지역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장 학생인권옹호관

제10조(학생인권옹호관 운영)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인권옹호관"이라 한다)은 교육감 소속으로 두되, 5급 상당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대표인권옹호관) ① 대표인권옹호관은 인권옹호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② 대표인권옹호관은 인권옹호관을 대표하고, 인권옹호관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인권옹호관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인권옹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인권옹호관이 미리 지명한 인권옹호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관할 지역) 인권옹호관의 권역별 관할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직무수행방법) ① 인권옹호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인권옹호관 전원회의의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인권옹호관은 누구든지 인권옹호관 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여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③ 인권옹호관 전원회의는 인권옹호관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심의하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인권옹호관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인권옹호관이 처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지원) ① 교육감은 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권옹호관 사무지원팀은 제1부교육감 소속의 학교인권지원과에 두되, 인권옹호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권역별 중심 지역교육지원청에 인권옹호관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권역별 중심 지역교육지원청은 교육감이 지정한다.



제15조(보고) 인권옹호관은 반기별 활동 실적을 각각 8월 말일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인권옹호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617호, 201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생인권옹호관의 권역별 관할지역(제13조 관련)

권역	관 할 지 역
1권역	수원 · 평택 · 안성 · 성남 · 용인 · 여주 · 이천 · 광주하남 · 양평
2권역	안양과천 · 안산 · 화성오산 · 군포의왕 · 부천 · 광명 · 김포 · 시흥
3권역	고양 · 파주 · 동두천양주 · 연천 · 의정부 · 구리남양주 · 가평 · 포천

※ 비교: 관할지역은 지역교육지원청 관할구역으로 구분한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 발행일: 2015년 1월
- 발행인: 경기도교육감 이 재 정
- 발행처: 경기도교육청
<http://www.goe.go.kr>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조원동495)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미래의 주인으로서
부여받은 의무를 강요하지만,
오늘의 주인으로서 누릴 권리는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의무만큼이나
소중한 권리가 있습니다.

『야누슈 코르착의 아이들』에서



경기도교육청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조원동495)

<http://www.goe.go.kr>